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서

(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

2024. 2.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1561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2년도 감사원이 타지자체의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조치
감독현황을 감사한 결과,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위생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누락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
하고자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보유신고를 의무화하는 수도
법이 '24년 1월 16일자로 개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법령
시행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시장
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
하며, 그 내용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